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 12. 26. 선고 2012고단 733 판결 절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창 위 지 방 법 위 마 산 지 위

판 결

사건 2012고단733 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 매체이용음란)

피고인 A

검사 정문식(기소), 김다래(공판)

판결선고 2012. 12. 26.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대학교 D학과 3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7.31. 05:30경 부산시 진구 E식당 내에서 후배 F, G 등과 함께 식 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B(19세,여) 일행을 발견하고 함 께 식사를 하자며 합석한 후 이야기를 나누다가 피해자 일행들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검정색 베가레이서) 1대 시가 890,000원 상당을 테 이블 위에 올려두고 나간 사이 몰래 자신의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 취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피고인은 2012. 7. 31. 11:18경 부산시 진구 H원룸 B-505호 자신의 원룸에서 앞서 절취한 B의 휴대전

2022-10-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I(19세, 여)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보지따삘 라씨발년 ", "섹스하고싶다진짜", "니랑 근데냄새날거같아"라고 음란한 메시 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B, I,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 1. 고소장
- 1. 압수조서
- 1. 내사보고
- 1.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31. 06: 49경 부산시 진구 H원룸 B-505호 자신의 원룸에서 앞서 절취한 피해자 B(19세,여)의 휴대전화 J번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의 페이스북에 접속한 후 '내보지는 걸래보지 담에 픽스가면 대줘야지 적중융 섹스좋아", "나랑 빠구리할사람"이라고 글을 올리는 등 수회에 걸쳐 음란한 문자를 게재하여 피해자로하여금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2. 판단

이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0. 22.경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사 긲관구